

1년 연수 후 취업으로 2년 연장 근무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개요 및 절차-



신광철
(사)한국인산경제자협의회 부회장

외국인에게 농업연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수 농가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운영 지침, 운영 요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1. 외국인농업연수제도란?

· 외국인을 한국의 농가(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취업토록 함으로써 농가는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은 기술과 소득을 얻게하며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정부정책사업이다.

· 중소기업, 연근해어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산업연수제도라는 틀 안에서 농업분야도 운영되며 농가(연수업체)는 외국인 초청 및 고용과 관련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3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농림부, 2003.1.27제정 2003.7.30개정)

-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요령(농협중앙회, 2003.2.28제정)

- 외국인산업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예규, 1998.2.23)

-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노동부 고시,

2002.12.18)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2. 농업연수생 도입 절차

· 송출기관 선정 및 농업연수생 선발

- 한국정부가 송출국가와 국가별 정원을 결정하여 상대국과 농협에 통보

- 상대국 정부가 연수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송출기관을 선정하고 농협에 추천

- 송출기관이 연수적격자를 공개 모집 후 배수 추천하면 컴퓨터추첨으로 선발

연령: 30세 ~ 45세 남자

경력: 5년이상 학업수료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건강: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자(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자)

· 농가(연수업체) 선정 및 연수생 배정

- 적절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농림부 지침)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농가 선정

- 선발된 연수생을 선정된 농가에 연수생배정기준(농림부 지침)에 따라 배정

※불법채류자고용, 임금채불,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수생배정을 제한합니다.

· 사증 발급 및 연수생 교육

- 사증 발급(2개월 소요)

송출기관 선정 및 농업연수생 선발

※ 송출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국가	중국	몽골	키르기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계
정원	900	200	200	200	200	200	1,900

활용조건

구분	내역	금액	비고	
경제적 의무	3년 공통	연수수당(1년차)	매월 740,000원 이상 (660,000원 이상)	최저임금의 115%. 단, 입국후 3개월 수습은 연수수당의 90%
		퇴직금 지급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연	1년이상 계속근로시 지급
		연수관리비 납부	계약시 540,000원	연수협력단
		임금보장보험 가입	계약시 60,000원	보증보험사
		숙식 제공	매일 -	
		외국인등록 수수료	인수후 10,000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재보험 가입	인수후 (요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가입	인수후 (요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2,3년차	임금(2,3년차)	매월 연수수당의 110%	연수생과 합의 결정
		체류자격변경 공증료	신고시 30,000원	공증사무소
건강검진		매년 30,000원	공인 의료검진기관	
국민연금		매월 (요일에 따라)	연금관리공단 (대상일 경우)	
기타 의무	① 계약체결(협력단/송출기관/연수생) ② 연수업체 대표자교육 이수 ③ 사증인정서 발급신청 ④ 외국인등록 · 변동사항 신고 · 체류자격변경 지원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⑥ 연수생에 대한 보건안전교육			

※ 상기 금액은 정부의 지침, 보험사와의 계약, 연수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인정서 발급신청
출입국 공무원이 농장을 실사한 후 사증인정서 발급
송출국주재 한국공관에 사증인정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
- 연수생 교육 및 건강검진(약 15일 소요)
입국전 연수생교육(송출기관 주관 11일 이상)
입국후 연수생 교육(농협중앙회

주관 3일)
연수생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 신청농가별 연수생 인계

3. 농업연수생 활용조건

- 체류기간: 3년(1년 연수후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거쳐 연수취업으로 2년 추가연장)
- 근무시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근무·휴게시간·휴일에 준함

4. 신청 자격요건

- 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업체(개인 또는 법인)
-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업체

5. 신청절차 및 서류

- 신청절차
 - 신청서 서식 배부
- 농 협 홈페이지

농업연수 대상업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업체

구분	세부업종 (신청할 수 있는 최소면적)
작물재배업	시설원예(4,000㎡), 시설버섯(1,000㎡), 과수(20,000㎡), 미나리(16,000㎡), 콩나물(200㎡)
축산업	젖소(1,400㎡), 한육우(3,000㎡), 돼지(1,000㎡), 말·레드디어·엘크(250㎡), 산양·꽃사슴·토끼(700㎡), 육계(5,000㎡), 산란계(2,000㎡), 오리·질면조·메추리(1,000㎡)

※농림부 지침 개정으로 신청 대상업종과 업체가 확대되었습니다.

(www.nonghyup.com 공지사항
Notice)

지역 농·축협 및 농협중앙회 시
군지부 지도계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협력단으로 동기우편 접수

주소: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
15 인송빌딩 9층 (우: 100-874)

수신: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
수협력단

- 신청서류
- 공통 서류

①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업태/종목에 대상업종명 표시)

③ 영농규모증명서 (시·군농업
기술센터에서 발급)

④ 영농시설 사진 (내부·외부)

⑤ 숙박시설 증빙(건물등기부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⑥ 숙박시설 사진 (내부·외부)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② 수출실적증명서·신지식농업
인증명서·수상증서 사본 (농가 선
정시 가점 경우)

신청서 작성요령

◎ 모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사증인정서 신청시 제출
하게 되며, 사증인정서 발급전 출
입국 공무원이 농장을 현지실사를
한다.

1.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란에
대상업종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작물
재배업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
무자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신규로 발급
받거나 해당종목을 추가할 수 있

다.

2. 영농규모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숙박시설 증
빙서 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3. 숙박시설 증빙서

· 신청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다.

- 본인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가족 소유: 건물사용동의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건
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증빙서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
택 또는 관리사일 경우만 해당된
다.

4. 사진

· 영농시설 내부·외부 사진: 영농
규모증명서 상의 영농시설과 일치

· 숙박시설 내부·외부 사진: 숙
박시설 증빙서 상의 숙박시설과 일
치

5. 추가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가점증빙서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농가 선정시 가점 자료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

업종 <산업분류코드>		영농규모별 배정기준 (단위 : m ²)									
작물재배업 <011>	시설	4,000이상	6,500	9,000	11,500	14,000	16,500	19,000	21,500	24,000	
		6,500미만	9,000	11,500	14,000	16,500	19,000	21,500	24,000	이상	
	시설	1,000	1,700	2,400	3,100	3,800	4,500	5,200	5,900	6,600	
		1,700	2,400	3,100	3,800	4,500	5,200	5,900	6,600	이상	
	과수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이상	
	미나리	16,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이상	
	콩나물	200	350	500	650	800	950	1,100	1,250	1,400	
		350	500	650	800	950	1,100	1,250	1,4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	2,400	3,400	4,400	5,400	6,400	7,400	8,400	9,400
			2,400	3,400	4,400	5,400	6,400	7,400	8,400	9,400	이상
한육우		3,000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이상	
돼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이상	
말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이상	
산양		700	1,700	2,700	3,700	4,700	5,700	6,700	7,700	8,700	
		1,700	2,700	3,700	4,700	5,700	6,700	7,700	8,700	이상	
육계		5,000	8,000	11,000	14,000	17,000	20,000	23,000	26,000	29,000	
		8,000	11,000	14,000	17,000	20,000	23,000	26,000	29,000	이상	
산란계	2,000	3,500	5,000	6,500	8,000	9,500	11,000	12,500	14,000		
	3,500	5,000	6,500	8,000	9,500	11,000	12,500	14,000	이상		
오리	1,000	2,200	3,400	4,600	5,800	7,000	8,200	9,400	10,600		
	2,200	3,400	4,600	5,800	7,000	8,200	9,400	10,600	이상		
연수생 배정기준	2명 이내	3명 이내	4명 이내	5명 이내	6명 이내	7명 이내	8명 이내	9명 이내	10명 이내		

※ 시설원예는 온실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기준이며,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층에서 재배·사육하는 경우에는 그 재배·사육면적의 합계기준임

※ 가금의 경우 부화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

연수업체 선정기준

1. 영농규모별 배점 (42점~50점)

영농규모별	작물재배업 (재배면적 m ²)					축산업 (축사면적 m ²)								배점
	시설 벼섯	시설 원예	과수	미나리	콩나물	젖소	한우우	돼지	말 레드더어 엘크	산양 꽃사슴 토끼	육계	산란계	오리 칠면조 메추리	
영농규모별 m ²	2,000 미만	20,000	24,000	35,000	400	4,000	5,000	3,000	600	2,000	25,000	10,000	2,600	42점
	2,000	20,000	24,000	35,000	400	4,000	5,000	3,000	600	2,000	25,000	10,000	2,600	44점
	4,000	25,000	84,000	64,000	840	6,000	11,000	5,000	1,300	4,800	40,000	15,000	6,000	
	4,000	25,000	84,000	64,000	840	6,000	11,000	5,000	1,300	4,800	40,000	15,000	6,000	46점
	6,000	30,000	144,000	91,000	1,270	8,000	17,000	7,000	2,000	7,800	55,000	20,000	9,600	
	6,000	30,000	144,000	91,000	1,270	8,000	17,000	7,000	2,000	7,800	55,000	20,000	9,600	48점
	8,000	35,000	200,000	121,000	1,700	10,000	23,000	9,000	2,800	10,500	70,000	25,000	13,000	
	8,000 이상	35,000	200,000	121,000	1,700	10,000	23,000	9,000	2,800	10,500	70,000	25,000	13,000	50점

※ 시설(축사)면적은 [별표 1]에서 산정한 면적기준임

2. 수출실적 가점 (5점~10점)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	1억원~ 1.5억원	1.5억원~ 2억원	2억원 이상
점수	5	6	7	8	9	10

※ 수출실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약물량 포함

3.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가점 (5점)

4.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신지식농업인 가점 (5점)

5. 정부상훈법에 의한 포상 가점 (2점~5점)

구분	농림부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상	훈장
점수(건당)	2	2	3	4	5

※ 농업유공자 포상에 한하며, 포상실적건수를 누계합산함

※ 농가는 영농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가족,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회사법인은 회사원의 포상실적을 모두 인정함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등록번호	
신청구분	신규(),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FAX	()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영농종사자수	명	숙박시설	m ²
업종명	영농품목		영농규모				
작물재배업(011)			m ² (동)				
축산업(012)			m ² (마리)				
수상실적	농림부장관·국무총리()건, 대통령()건, 포장()건, 훈장()회						
수출실적	(200)년도		천만원	신지식농인	여, 부		
외국인체류자	총명	국가명	송출기관	인원	국가명	송출기관	인원
연수생	명	①		명	②		명
연수취업자	명	①		명	②		명
연수생	신청인원	명		연령	세		
신청현황	희망국가	①	②	③			
예상연수수당(월)	월 ()만원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연수생 활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고유번호 증명서류 사본						수수료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없음
3. 영농규모증명서							
4. 수출실적증명서, 신지식농업인증명서, 포상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							
5. 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영농규모증명서

발급번호	
신청구분	신규(),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고유번호)	- -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FAX	()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영농종사자수	명	숙박시설	m ²
업종명 <산업분류번호>	세부업종	시 설 면 적			품 목
작물재배업 <011>	시설원예	재배연면적: m ² (유리온실: m ² , 동+비닐하우스: m ² , 등)			
	시설버섯	재배연면적: m ² (등) < 단>			
	콩나물	재배연면적: m ² (등) < 단>			
	과 수	재배연면적: : m ²	: m ²	: m ²	: m ²
	미나리	재배연면적: m ²			
축산업 <012>	축종별	축사면적(부대시설제외)		품목별두수	
	소	총 m ² (총 등)	한육우 두, 젃소 두		
	말	총 m ² (총 등)	두		
	돼지	총 m ² (총 등)	두		
	사슴	총 m ² (총 등)	꽃사슴 두, 엘크 두, 레드디어 두		
	산양	총 m ² (총 등)	두		
	닭	총 m ² (총 등)	육계 수, 산란계 수		
	오리	총 m ² (총 등)	수		
	매추리	총 m ² (총 등)	수		
	칠면조	총 m ² (총 등)	수		
부화장	총 m ²	최대부화용량:		수/일,	수/일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업체의 영농규모를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날인)

6. 연수업체추천신청서

· 신청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는 우편물수령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신청구분		신규(),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고유번호)		- -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FAX	()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영농종사자수	명	숙박시설	m ²
업종명	영농품목		영농규모		
작물재배업(011)			m ² (동)		
축산업(012)			m ² (마리)		
수상실적	농림부장관·국무총리()건, 대통령()건, 포장()건, 훈장()회				
수출실적	(200)년도	천만원	신지식농인	여,	부

· 현재 활용중인 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현황을 가로로 기재합니다.

외국인체류자	총명	국가명	송출기관	인원	국가명	송출기관	인원
연수생	명	①		명	②		명
연수취업자	명	①		명	②		명

- (신청인원)은 배정기준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희망국가)은 6개국 중 선택(중국, 몽골,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 신청한 연령 및 국가의 연수생을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생	신청인원	명	연령	세
신청현황	희망국가	①	②	③
예상 연수수당(월)		월()만원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연수생 활용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고유번호 증명서류 사본			수수료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없음
	3. 영농규모증명서			
	4. 수출실적증명서, 신지식농업인증명서, 포상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			
	5. 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